

	<h2 style="margin: 0;">마이크로전공트랙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	3-3-32	
			개정일자		2020.03.01.	
			개정일자		-	
		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1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동양미래대학교 학칙」 (이하 “학칙” 이라 한다) 제30조의2에 따른 마이크로전공트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주전공은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말한다.
- ② 마이크로전공트랙(이하 “트랙” 이라 한다)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학과에서 일부 과목을 체계화하여 개설하는 전공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) 「교육과정심의위원회」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트랙 개설,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- 제4조(트랙 운영)**
- ① 트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 ‘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‘마이크로전공트랙 운영신청서’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 - ② 트랙은 대학 ‘교육과정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

제5조(트랙 교과목 편성) 트랙 교과목은 학기별로 균등하게 연간 4개 교과목, 10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6조(트랙 이수)**
- ① 트랙에 포함된 4개의 교과목 모두를 이수한 경우 이를 성적증명서에 표기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.
 - ② 트랙 수강신청 방법 및 허용 범위는 「타학과수강에관한규칙」을 적용한다.

- 제7조(트랙 이수 불인정)**
- ① 트랙에 포함된 4개의 교과목 모두를 이수하여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랙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
 - 1. 본인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트랙
 - 2. 1개 이상의 트랙 교과목과 주전공의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
 - 3. 트랙 개설 학과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
 - ② 복학 시 이수하고 있던 트랙이 폐지된 경우에는 트랙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

제8조(기타) 트랙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